

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483호
2. 발 의 자 : 황유정 의원(찬성자 15명)
3. 발의일자 : 2026년 02월 09일
4. 회부일자 : 2026년 02월 12일

II. 제안이유

-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육성계획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가. 시민 공표 방식을 ‘서울시보 게재’로 규정함(안 제4조제3항).

IV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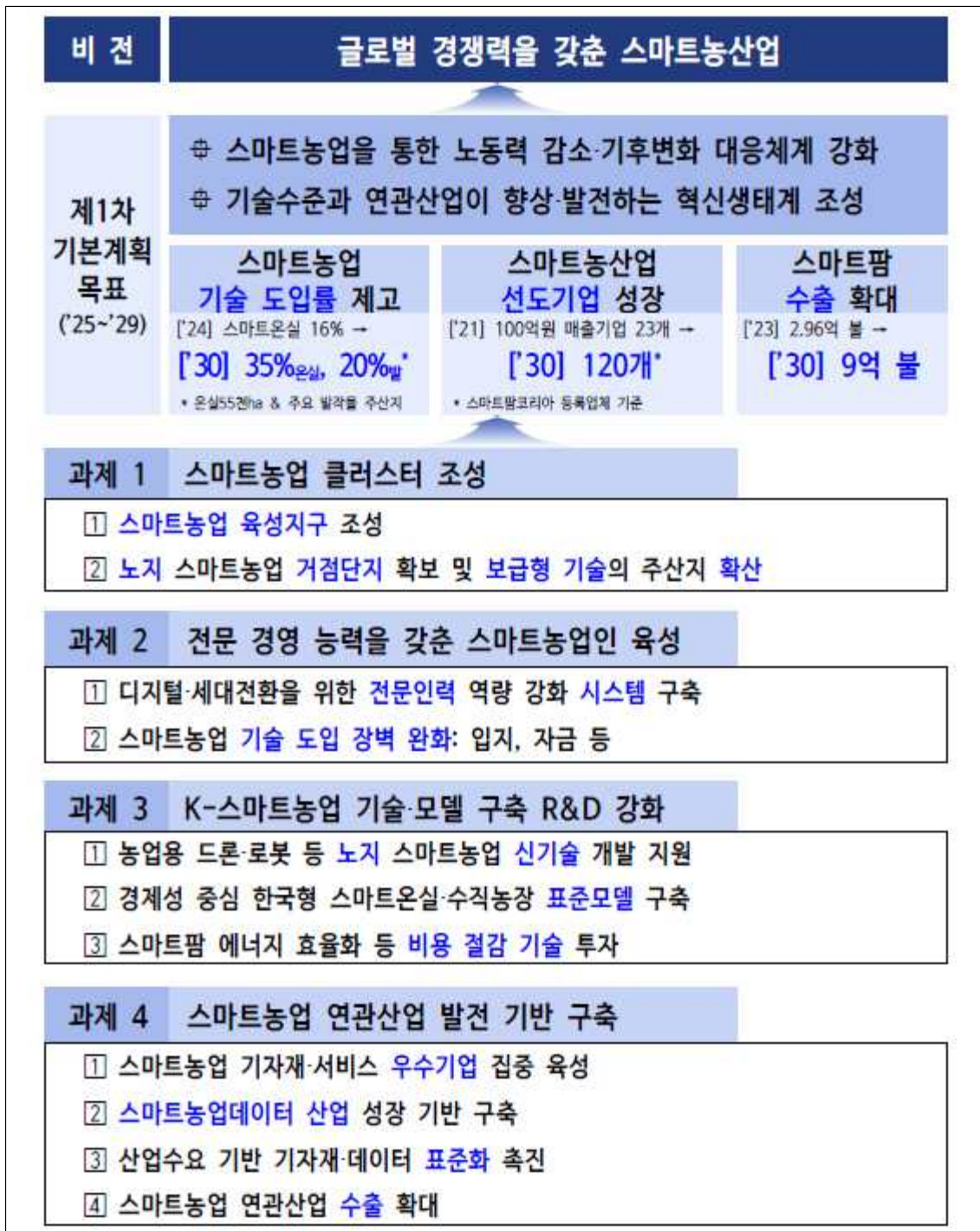
1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공표 방법을 서울시보에 게재토록 함으로써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표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현황

- “스마트농업”이란 농업의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지칭함.
- 최근 기후위기, 농업 성장 동력 약화 등에 따라 농산업 혁신과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스마트농업법”)이 2023년 7월 25일 제정됨(2024년 7월 26일 시행).
- 스마트농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(5년 단위)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시·도지사는 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)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“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(2025년~2029년)”과 “2026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”을 수립하여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.

<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체계 >



- 그러나 상위법 및 동 조례에서 육성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농지 면적 및 농업 생산 규모가 제한적인 도시형 농업 구조를 이유로 별도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3.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공표방법 구체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공표 방법을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규정함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)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<u>시민에게 공표</u> 하여야 한다.	제4조(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시보에</u> <u>게재하여 시민</u> -----.

-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스마트농업법 제5조에서는 시·도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.
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5조(시·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시·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.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.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.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.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자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특별시장,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④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시·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·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그러나 서울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현재 까지 규정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야기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은 공표 방법을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비하여 법적 미비 상태를 해소하고 공표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- 특히 서울시보는 서울시의 공식 공보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공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계획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판단됨.
- 한편 법제처는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9조의3¹⁾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자치법규의 정비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, 그 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시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 4분기부터 법제처로부터 동 조문의 입안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.
- 또한 동 개정사항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“필수조례 제때 마련율²⁾” 지표에 반영되는 조례로서, 2025년 2월 서울시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바 있음³⁾.

1)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9조의3(자치입법 지원)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,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.

2)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꼭 마련해야 할 필수조례 중에서 해당 지자체가 실제로 마련한 필수조례의 비율

- 이처럼 동 조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상위법 위임 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.

담당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

3)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(필수조례 제때 마련율) 지표 대상 법령 알림(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-247, 2025.2.28.)